

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: 2009. 3. 2.
- 나. 제 안 자 : 이운필 의원, 김호수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09. 3. 6.
- 라. 상정일자 : 2009. 3.13.

2. 提案說明要旨(제안설명 : 이운필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체계적인 지정관리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으로 주차 취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
-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표시선을 형식보다는 실용에 기준을 두고 선진사례 검증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므로 주차선 도색 기준을 마련 도색 공사 시 공사비 절감 효과 기대
-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
(안 제2조의2)
-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하여 공공용지 등을 우선 고려하고 설치 비용 부담 및 부지 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(안 제10조의2)
-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선 도색시 기준을 마련
(안 제11조 제4항)
- 기타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

3. 檢討報告要旨(검토보고 : 전문위원 신동은)

- 본조례안은 2009년 1월 8일 수원시 조례 제2821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
-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체계적인 지정 관리를 위해서 대상범위를 일정 비율에서 주차확보율 40%이상 70%이하인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코저 하는 것이며 (안 제2조의2)
- 노외주차장 편익시설등 면적 비율을 극대화 시켜 주차장 시설의 활성화와 공영주차장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(안 제3조의2, 안 제10조의2, 안 제19조의2)
- 주차공간의 구획 표시선 도색공사시 공사비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차 구획선 표시등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도 그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(안 제11조 등)
- 다만 주차 환경 개선지구를 주차확보율 40%이상 70%이하 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년차별 집행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
- 노외주차장의 편의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규정하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, 이에 따른 실행 방안 및 운용상의 문제점등을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케 하고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 하는 조례나 안전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.

4. 審査結果

- 본 조례안은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체계적인 지정관리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으로 주차 취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
- 주차구획 표시선을 형식보다는 실용에 기준을 두고 선진사례 시공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므로 주차선 도색 기준을 마련 도색 공사 시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
- 제2조의 2 “지역을”을 “지역중에서 10퍼센트 이상을”로 수정하고, 제3조의 2를 삭제하며,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운필 의원, 김효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조의 2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확보를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<u>지역을</u>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단, 40퍼센트 미만 지역은 장기 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한다.	제2조의 2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지역중에서 10퍼센트이상을</u> -- ----- ----- -----.
<u>제3조의 2(노외주차장의 편의시설 등 면적비율)</u> <u>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. 다만,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면적은 주차장 총 면적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</u>	<u><삭 제></u>